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908
----------	-------

발의연월일 : 2026. 1. 8.

발 의 자 : 진선미 · 이건태 · 김한규
박정현 · 박상혁 · 문진석
박은정 · 김용만 · 이용우
김우영 · 최혁진 · 양문석
문대림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규모 및 재원 등이 포함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감독
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감독청은 학교시설사업을 계속 시행하기 어
렵다고 인정되거나 사업 시행이 현저히 늦추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등의 경우 시행계획 승인을 취소하거나 시행계획의 변경, 그 밖
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감독청은 학교 신설을 위한 심사과정에서 학령인구 감소, 부
지 협의 지연 등을 이유로 당초 승인한 시행계획과 달리 학급 축소
등 학교규모를 축소하거나, 교사동만 먼저 승인하고 체육관 · 급식실
등 부속시설은 추후 별도 심사하는 등 불완전한 상태로 학교를 운영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 경우 학교법인 중 해당 승인 조건 이
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승인받은 기간만 연장하는 사

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이로 인해 불완전한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학생의 학습권 및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이 침해받고 있고, 학교부지로 지정된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를 장기간 이용하지 못하거나 매매하지 못하여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사업자에게 시행계획 또는 변경시행계획의 이행 의무를 부과하고, 감독청은 학교시설사업자가 시행계획을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이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행계획 및 변경시행계획의 이행의 규범력과 사업 지속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하고자 함(안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17조 신설 등).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등의 이행 의무 등)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받은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변경승인받은 자는 그 시행계획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시행계획(이하 “변경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감독청은 시행계획 또는 변경시행계획의 이행 여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의3(시정명령) ① 감독청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받은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변경승인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시행계획 또는 변경시행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공익 침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승인의”를 “및 변경시행계획 승인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학교시설사업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을”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7조(이행강제금) ① 감독청은 제4조의3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학교시설사업 시행 계획 승인을 받은 자 또는 변경시행계획 승인을 받은 자에게 시행 계획 및 변경시행계획의 내용, 공익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정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 ③ 감독청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것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 ④ 감독청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 ⑤ 감독청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⑥ 감독청은 제4조의3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 ⑦ 감독청은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

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4조의2(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등의 이행 의무 등) ① 제4조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 받은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변경승인받은 자는 그 시행계획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시행계획(이하 “변경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감독청은 시행계획 또는 변경시행계획의 이행 여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u><신 설></u>	제4조의3(시정명령) ① 감독청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받은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변경승인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시행계획 또는 변경시행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공익 침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제11조(시행계획 승인의 취소 등)

감독청은 사업시행자(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승인을 취소하거나 시행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생략)

2. 학교시설사업을 계속 시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사업시행이 현저히 늦추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시행계획 및 변경시행계획 승인의 취소 등) -----

ㄱ.

1. (현행과 같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을-----

제17조(이행강제금) ① 감독청은 제4조의3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받은 자 또는 변경시행계획 승

인을 받은 자에게 시행계획 및
변경시행계획의 내용, 공익 침
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은 특별한 사유가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정명
령에서 정한 이행기간 종료일
다음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
다.

③ 감독청은 제1항에 따른 이
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
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것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④ 감독청은 제1항에 따른 이
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
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
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
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⑤ 감독청은 최초의 시정명령
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⑥ 감독청은 제4조의3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⑦ 감독청은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